##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감액통지서

(파생상품거래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[	] (이하"고객"이라 한다)간	년	월	일에
체결한 '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약정서'의 제4조에 따라 파생상품거래	l 손실한도를 감액하므로 <mark>은</mark> 행은	고객에게	다음과	같이 통
지한니다 변경 호 파생상품거래 소식하도는 보 통지서를 고객이 수령(	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	부터 유효	한니다	

제1조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의 감액

[변 경 전]	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	원	
[변 경 후]	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	원	

년 월 일

(고 객) (은행)

주 소: 주 소:

상 호: (인) 상 호: 주식회사 하나은행 (인)

